[별지 제3호서식]

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(정정) 심의·결정통지서
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 번 호		대상자와의 관 계	
	주 소	(전화번호 :)				
대상자	성 명 (한자)	()		생 존 여 부	□ 사망 □ 생존 □ 행방불명	
	등록기준지		출 생 년월일		성별	□ 남 □ 여
신청내용						
심의결정						
위원회의결	안건번호		일자			

「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」 제5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·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

※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(정정) 신청은 **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(정정)신청서**(「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(대법원규칙)」 제4조제1항의 별지 서식)에 본 **심의·결정통지서**와 **진실규명결정통지서**,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,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·읍·면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※ 문의할 곳 담당자: 전화: